

붙임2

채용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조치 근거

□ 인사규정 제12조(채용결격)

제12조(채용결격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.

<개정 2016.4.5./2016.10.31./2017.12.29./2018.7.23./2019.8.20./2021.5.6./2024.9.3.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삭제 제 <2021.5.6>
9.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
10. 삭제 제 <2021.11.26>
11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2.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
□ 채용시행세칙 제19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제19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사의 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.

1.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전형에 응시한 경우
2.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
3.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